

**2024 서울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



총괄

강향숙 서울연구원 윤리감사실장

인권영향평가단

김영길 서울연구원 윤리감사실

한종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팀

이수아 서울연구원 연구기획팀

한혜정 서울연구원 출판팀

김미연 서울연구원 출판팀

박은미 서울연구원 홍보협력팀

남민아 서울연구원 총무팀

오상준 서울연구원 총무팀

최수빈 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

심아름 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

차병관 서울연구원 재무팀

강창구 서울연구원 정보시스템팀

김기원 서울연구원 정보시스템팀

담당

박진아 서울연구원 윤리감사실

목차

01. 개요	1
1. 배경 및 추진 내역	1
2. 2024년 인권경영 이행사항	7
02. 2024년 서울연구원 인권영향평가	12
1. 시행 개요	12
2. 인권영향평가 결과	15
03.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28
1. 인권경영 실행	28
2.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29
3.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30
04.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31
1. 인권침해 구제제도 개요	31
2.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내역	32
부록.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명단	33

01. 개요

1. 배경 및 추진 내역

1) 인권경영 도입 배경

(1) 2014년 이전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결정

(2) 2018년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인권경영 도입 권고”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

(3) 2019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 인권경영지표 신설

2)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추진 내역

(1) 2018년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도입계획 및 점검표 제출 - 3개년 단계적 도입·확산

(2) 2019년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인권경영포럼’ 참석
- 연구원 전 구성원 대상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인권경영’ 교육 시행
-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인권경영체계 구축 이행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내용	세부사항	비고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 배치	○ 전담조직 : 성평등·인권센터 - 총괄: 반정화(성평등·인권센터장) - 실무: 김하나(인권전문관)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수립 및 시행 (2019. 12.)	○ 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실행 및 공개, 실태조사, 구제 등 필수내용 포함
인권경영위원회 독립적 구성·운영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019. 12.)	○ 내부위원 : 원장 등 4인 외부위원 : 인권전문가 등 5인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 2019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조치 및 성평등·인권 교육 종합 계획 수립 ○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4회 및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 1회 시행, 온라인 교육 시행	○ 2019년 인권교육 참석률 76.8% ○ 전문가 초빙 강연 주제 - 청소년과 인권, 직장 민주주의, 인권경영과 노동권 등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 내·외 확산

내용	세부사항	비고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일시 : 2019년 12월 10일 ○ 장소 :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 : 서울연구원 임직원 약 100여명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 국제 인권규범 준수,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노동/일·생활 균형/산업 안전/공정 거래/사생활 보호/지속가능한 환경 등 분야 포함 ○ 연구 활동 수행 시 인권침해 유의 강조	
인권경영 선언 대·내외 확산	○ 인권경영 선포식 언론보도 ○ 인권경영 선언 대외 기관 공문 발송	

(3) 2020년

- 인권경영위원회 1차 임시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26일(화) 10:00, 서울연구원 2층 집현실
 - 안건 : 위원장 호신, 인권경영 지침 검토, 2020년 이행 계획 검토 등
- 서울시 인권담당관 서면 지도점검 시행 및 보완 의견(2020.7.16.)
 - 기관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카테고리 독립개설 및 관련 자료 적극 공개
 - 기관장 인권교육 필수 참여 안내(2021년 평가부터 감점요인 예정)
 - 인권영향평가 과정 전반에 있어 인권경영위원회의 주체적 참여
 - 인권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방지조치 수립 및 조치 이행'의 적극 실행
- 인권교육 시행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 교육 시행(서울시 인권담당관 권고)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콘텐츠 활용
 - 전 직원 대상 시행 및 연중 교육 이수율 : 83.6%
- 인권영향평가 시행
 - 기관운영/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항목 및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구축
 - 지표별 관련 부서에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점검 시행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 서울연구원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 연구원 홈페이지에 구제절차 개요 안내 및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 총 1건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완료
- 인권경영위원회 2차 정기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9일(화), 서면 의결로 대체
 - 안건 : 인권영향평가 등 2020년 인권경영 이행 내역 보고 및 승인
- 이행보고서 대내외 공개
 - '2020 서울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 온/오프라인 공개(홈페이지 등)

(4) 2021년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안건 : 2021년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계획 심의·의결
 - 임시회 안건 : 2021년 인권경영 성과 보고, 구체절차 개선안 검토
- 인권교육 시행
 - 감염병 확산에 따라 zoom활용 비대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행
 - 전 직원 대상 시행 및 연중 교육 이수율 : 85.6%
- 성평등·인권 존중 각종 사업 시행
 - 홍보물 및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시행
 - 성평등·인권 기반 연구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기초 연구 시행
 - 성평등·인권 주간 운영 : 온라인 소식지 발송, 조직문화 캠페인 등
 - 성평등·인권 존중 우수 사례 선정 및 포상 : 연구사업 및 일반사업 대상
- 인권영향평가 시행
 - 기관운영/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항목 및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구축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지표별 관련 부서의 자체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 시행
-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인권경영 실행
 - 연구 착수 및 편집위원회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소지 예방 조치 마련 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연구결과보고서에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유발하는 용어 등 사용 개선, 성별/연령별/지역별 분리통계 활용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사업 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평가 방식 적용 고려 등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인권침해 구체절차 제공
 - 인권경영 지침 개정, 홈페이지에 구체절차 안내 및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 인권경영 이행보고서 대내외 공개

(5) 2022년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안건 : 2022년 인권경영 계획(안), 구제절차 지침 분리 제정
 - 임시회 안건 : 2022년 인권경영 성과보고 및 인권경영 지침 개정
- 인권교육 시행
 - 자체 교육 기획하여 집합교육 및 Zoom 활용한 비대면 교육 시행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이수율 : 94.91%
- 서울시 성평등 노동환경 컨설팅 결과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우수 기관 선정
 - 기관 자체적인 성평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시행 및 성평등 인권존중 기반조성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서울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관리자 대상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연 1회 정기 시행
- 2022 서울연구원 인권침해 실태 및 인식조사 시행
 - 인권침해 예방, 인권경영 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 및 인식 조사 시행
- 성평등·인권 존중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2022년 완료된 연구과제 및 일반사업 대상으로 주제, 기획의도, 진행 방식, 결과 및 성과 확산 분야별 성과 여부 심사
 - 전문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 최우수 사례 2건 선정
-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 인권침해 방지조치 이행 및 보고서 대내외 공개
 - 기관운영·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개선
 - 내부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지표개선, 자체 점검 결과 전문평가단 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2022년 인권경영 성과보고서 연구원 홈페이지 등 대내외 공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명확화 및 대내외 공개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지침」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분리 제정으로 구제절차 명확화하고 구제제도 홈페이지 등 대내외 공개

(6) 2023년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안건 : 2023년 인권경영 계획(안), 인권영향평가 지표(안) 심의
 - 임시회 안건 : 인권경영지침 개정(안), 서울연구원 인권경영헌장 개정(안) 및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승인
- 인권교육 시행
 - 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주제 기획하여 대면 및 비대면 시행
 - ‘나를 바로 세우기’, ‘행복한 조직문화’, ‘사회적가치 구현과 인권경영’ 등 구성원의 인식 제고와 실천 도모를 위한 교육 발굴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인권교육 이수율 : 90.11%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인권선언문 개정 및 대내외 공표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2023년 10월 23일(월),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적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과 의견 존중,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등 개정 및 국·영문판 제작하여 공개
- 성평등·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 홍보물,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성평등·인권존중 조직문화 확산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무 교육 등 직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하여 대내외 공개
 - 인권영향평가 고도화로 주요 인권이슈 도출 및 부서별 대응계획 마련
 - 연구원 특성에 맞게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3개 분야 199개 지표 개발
 -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시행하며, 분야별 이해관계자 워크숍 및 내·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병행 실시
 - 2개 분야별 4개 항목의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성과 대내외 공개
- 인권침해 구제제도 개선
 -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조사 협력체계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조사 방식으로 개선하여 구제절차 한계점 보완과 신속성 확보

2. 2024년 인권경영 이행사항

1) 비전 및 추진체계

(1)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비전 체계

기관 미션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추구		
기관 비전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		
인권 비전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보장되는 조직문화 구현		
추진 방향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구제
인권 목표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인권친화형 조직문화 확산	구제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경영 규정, 체계 개선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경영 전문성 강화 3 인권경영선언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인권경영 교육 및 환류 5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리스크 효율적 방지 6 인권경영 이행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구제제도 매뉴얼 정비 8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구제제도 적극 홍보 9 구제제도 효용성 강화

(2)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인권경영 심의의결기구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주관 부서 업무,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 및 점검 의무 등 심의·의결 · 구성 : (내부위원) 부원장, 윤리감사실장, 직장협의회 근로자 위원, 추천직 위원 (외부위원)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이해관계자
주 관 부 서	윤리감사실
구 제 제 도 심의의결기구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권침해 사안 및 구제조치에 관한 심의·의결 · 구성 :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

2) 인권경영 주요 이행사항

<p>인권 보호</p>	<p>인권경영 규정 및 추진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관 지정 등 인권경영 관련 규정 개정(2월) - 인권침해 방지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신규 제정(6월) - 인권경영 주관부서 윤리감사실 지정으로 인권보호, 구제 등 인권경영 추진력 강화 - 인권경영위원회를 장애인권, 인권경영, 노무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 신뢰성 강화 <p>고충상담창구 상시 운영 및 인권침해 방지 노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관(윤리감사실장) 포함 청사별·직군별 고충상담원 상시 운영 - 고충상담 내실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추진 - 전 임직원의 장애인 직원 차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 추진 <p>인권경영 선언 및 인권선언문 대내외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 인권정책 선언주체,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현장 개정 - 전 임직원의 인권경영현장 선언식 개최 및 선언문 대·내외 공표
<p>인권 증진</p>	<p>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내재화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환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제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정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지속 추진 - 차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인권의식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발굴 - 인권침해 실태조사,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결과 환류 실시 <p>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리스크 효율적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항목 추가, 기관운영 사업 총 12개 분야 180개 지표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 인권리스크 방지 노력 추진 - 내부평가단 및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 실시로 결과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 - 중대성 평가 결과 주요 인권이슈 도출 및 인권침해 방지 조치 이행 <p>인권경영 이행 결과 공개로 인권경영 성과 효과적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관장 보고 - 인권경영 이행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인권경영 성과 확산
<p>인권 구제</p>	<p>형평성, 공정성, 실효성이 담보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관(윤리감사실장) 지정하여 온/오프라인 상시 신고 및 상담체계 일원화 - 신고 접수 시 조사원칙, 처리 매뉴얼에 입각하여 전문 노무법인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함으로써 구제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 피해 회복 지원 및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의료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예방교육 시행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발굴 확대 <p>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인권침해 등 구제제도 적극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제도 매뉴얼 수립 및 공개, 구제절차 리플릿 제작 등 구제제도 홍보 활동 강화 - 정기적인 인권침해 실태 및 인식조사, 구제제도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p>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효용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구제제도 지침 강화, 구제제도 공정성 확보와 현행 모니터링으로 효용성 강화

(1) 인권교육 추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제21조(인권교육)
- 2024년 성평등·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 추진 개요

- 기간: 2024년 1월 ~ 12월(연중)
- 대상: 서울연구원 소속 전 직원(기관장 포함)
- 시수: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추진 결과

구분	주제	강사	일시 및 장소	인원
집합교육 (자체기획)	2024년 인권경영 관리자 교육 특강 : 다정한 일상을 위한 든든한 인권 - 지속할 수 있는 인권 리더십 - 인권 옹호자의 역할(인권감수성의 이해와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 - 세계인권 선언의 의의, 인권 존중 책임과 마음 돌봄 등	유현정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6.10.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36명
집합교육 (서울시 등)	2024년 서울시 인권 아카데미 - 인권교육(영화형, 토론형, 강의형)	배희은(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정현아(인권교육연구소) 유현정(국가인권위원회)	2024.4.~9. 서울시	34명
사이버교육	[법정교육 길라잡이] 인권교육 - 인권의 정의 - 인권감수성의 이해 - 인권감수성 훈련 통한 인권친화적 실천 등	김양희 강사	연중 수시 사이버교육 (주울원에듀)	346명

(2) 성평등·인권 보호 사업 운영

□ 홍보물(연중) 및 주요 사업 성별영향평가 시행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연구원 홍보물 심의 및 검토의견 반영
-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 2024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 고충상담 내실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추진

(3) 인권경영 전 단계 이행

유형별 인권침해 예방지침 마련

규 정	주요 내용	비 고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024. 2. 22. 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의거 인권보호관 지정 · 인권경영 전담부서 감사실 지정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지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024. 6월 신규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서울연구원 집현실
 - 안건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안), 2024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심의
- 인권경영위원회 2차 임시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0일(화)~11일(수), 서면개최
 - 안건 : 2024년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보고서 심의

인권선언문 개정 및 공표

- 전 임직원의 인권경영현장 선언식 및 선언문 대내외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적용,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의견 존중,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등 개정사항 반영한 국·영문판 제작 후 공개

인권영향평가 시행

- 전년도 인권경영 평가 반영,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장애인 직원 채용 및 고용 관련 노동 인권리스크 점검을 위한 평가 보완 시행
 - 연구원 특성에 맞게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2개 분야 180개 지표 개발

-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시 분야별·부서별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병행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선제적 조치사항 점검 등 능동적인 인권경영 도모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9.1점으로 우수, 중대성 평가 결과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의 주요 인권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및 홍보 강화

- 인권보호관 지정, 고충상담원 지정 확대 및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개정 사항 공유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및 매뉴얼 홍보
-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매뉴얼 공개, 온·오프라인 신고창구 운영
-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의료·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리플렛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홍보 확대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내재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실시

- 임직원의 인권침해 현황과 인권의식 파악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계획 수립에 활용
- 인권체험행사(교육), 인권의 날 캠페인(푸드트럭) 등 활동 확대를 통해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증진 도모

인권경영 보고서 공개 및 성과 확산

- 2024년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성과 포함 인권경영 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하여 성과 확산

02. 2024년 서울연구원 인권영향평가

1. 시행 개요

1) 근거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4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감사살-897, 2024.05.07.)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⑦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각 부서의 방지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차년도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목적

-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연구원의 추진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
- 인권경영 고도화를 통한 선진적 인권경영 실천 및 대외 의지 표명
-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에 따른 인권의식 향상 도모
- 궁극적으로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와 서울 시민의 인권증진 기여 및 평가 과정을 통한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감수성 향상 도모

3) 대상 분야

연구원의 기관운영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환경권, 감염권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4) 주요 개념

(1) 인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함. 즉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로, 모든 사람을 인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등하고 보편적이며 양도 및 나눌 수 없는 권리를 말함 (국가인권위원회 2018, 서울시 2018)

(2) 인권영향평가

정부, 조직, 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 절차, 그리고 내용이 인권의 실현과 보호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서울시, 2018)

5) 2024년 인권영향평가 개선사항(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인권리크스 방지조치 이행 완료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성과지표(목표)	결과 (담당부서)
보안업무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유의	보안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업무 담당직원 보안서약서 징구	완료 (감사실)
인권침해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 교육 실시	보안업무 담당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교육 별도 시행	보안업무 담당직원 인권침해 유형·사례 별도 교육	완료 (감사실)
감염병 감염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감염병 유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방침 등에 관한 매뉴얼 수립	감염병 대응지침 등 매뉴얼 마련	완료 (총무팀)
허위정보 확산 및 소외그룹에 대한 편견 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허위정보 확산과 소외집단에 대한 편견 방지 절차 마련	인권보호, 소외집단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지침 마련	완료 (총무팀)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인권위원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실태조사 (2023.4.~11.) 결과 권고사항 반영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신설

6) 추진 경과

시 기	내 용
2024. 5. 7.	서울연구원 2024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2024. 6. 21. ~ 6. 25.	2023년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지표(안) 서울연구원노동조합 검토 의견 수렴
2024. 6. 26.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및 인권영향평가 평가팀 구성
2024. 7.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교육 및 관련자료 제출 협조 요청
2024. 7. 16.	인권영향평가 자체 평가 시행
2024. 7. 23.	인권영향평가 외부 전문위원 현장실사
2024. 7. 29.	인권영향평가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도출
2024. 8. 5.	인권영향평가 주요 이슈 개선방안 수립
2024. 8. 26.	인권영향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
2024. 11. 2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침해 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2.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개요

- 주관 부서 : 윤리감사실
- 평가 대상 : 서울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평가 기간 : 2024년 5월 28 - 11월 22일
- 평가방법 : 전 부서 항목별 자가점검 및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이행 수준과 성과를 평가
- 평가 지표 : 총 12개 분야 180개 항목

분 야	지표	분 야	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3	7. 시민(현지 주민) 인권보호	1
2. 고용상의 비차별	22	8. 환경권 보장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5	9. 시민(고객) 인권보호	12
4. 강제 노동의 금지	9	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11
5. 산업안전보장	17	11. 직원 인권보호	31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1	12.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3

- 변동 사항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초안 개발 및 체크리스트 최적화로 이해관계자 대상별 주요 인권 영향요인 파악 후 인권 이슈 도출
 - 연구원의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 및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수용도 제고
 - 내·외부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 지표구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서울연구원에 맞게 조정하여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등 12개 분야 180개 지표 개발

2) 평가결과 종합(12개 분야, 180개 지표)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3	0	0	0	0	33
2	고용상의 비차별	21	1	0	0	0	2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5	0	0	0	0	15
4	강제 노동의 금지	9	0	0	0	0	9
5	산업안전보장	17	0	0	0	0	17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1	0	0	2	11
7	시민(현지 주민) 인권보호	1	0	0	0	0	1
8	환경권 보장	5	0	0	0	0	5
9	시민(고객) 인권보호	11	1	0	0	0	12
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11	0	0	0	0	11
11	직원 인권보호	31	0	0	0	0	31
12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9	0	0	0	4	13
합 계		171	3	0	0	6	180

-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전 영역에 걸쳐 달성 정도가 우수하며, 인권영향평가의 도입단계를 넘어 인권경영의 정착 단계에서 그 정착 수준이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 달성률 99.1점으로 ‘고용상의 비차별’,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시민(고객) 인권보호’ 분야에서 ‘보완필요’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3개의 지표가 도출되었음
- 총 180개 지표 중 예 171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필요 3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6개로 집계됨

3) 분야별 평가 결과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현장을 수립하여 선언식 개최 후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공개 관리하고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안전에 대한 협의 후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후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의 전반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개를 실시하고 있음
- 구제절차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감사실 신고, 상담 전용 메일 신고, 외부 전문기관 신고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채널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p>	항 목	계
	1. 인권존중 정책선언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0
	4. 인권경영 성과	100.0
	5. 구제절차 마련	100.0
평 균	100.0	

(2) 고용상의 비차별

- 연구원은 대부분의 고용상의 비차별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성별,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 등 다양한 근로자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제 공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인권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채용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0
	2.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0
	3.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87.5
	4.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5.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0
평 균	97.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최근 조직통합과 복수노조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나 서울연구원은 노조활동 자유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장하고 있음. 노조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성실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서울연구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평 균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 연구원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 및 휴일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사전통지 후 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평 균	100.0

(5) 산업 안전 보장

-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가 작업장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후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임산부는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음
- 안전보호구를 확보하여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전문가에 의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MSDS를 확보하여 해당 장소에 적절하게 게시 관리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금연 프로그램, 비만 예방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발생 시 요양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5. 산업안전보장</p>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평 균	100.0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징구하고 있음
- 갑질피해 신고센터, 부패비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청탁 신고센터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2024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알림문자 발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협력사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가 요구됨
- 보안담당 직원 대상 인권침해 방지 개선 계획에 따라 인권보호 교육 시행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권고의견 : 협력사와 계약 체결 이후 인권보호 준수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 (ex. 설문, 서면, 방문,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요소 검색 등)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를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p>	항 목	계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0
	2. 모니터링 실시	83.3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0
평 균	94.4	

(7) 시민(지역주민)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며,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사전 검토 및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연구원은 출처 표기 및 보상 제공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연구윤리규칙과 표절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7. 시민(현지 주민) 인권보호</p> <p>1. 지적 재산권 보호 100.0</p>	항 목	계
	1. 지적 재산권 보호	100.0
	평 균	100.0

(8) 환경권 보장

- ESG 경영 추진계획, 자원순환 관리계획, 에너지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경영정보공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관리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8. 환경권 보장</p> <p>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0</p> <p>2. 환경정보의 공개 100.0</p>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0
	2. 환경정보의 공개	100.0
평 균	100.0	

(9) 시민(고객) 인권 보호

- 고객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발간체계 개선계획 및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이슈, 정책 등 서비스 정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9. 시민(고객) 인권 보호</p> <p>0.0 20.0 40.0 60.0 80.0 100.0</p> <p>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p> <p>2. 서비스·정보 등 이상 시 조치 100.0</p> <p>3. 고객 사생활 보호 91.7</p>	항 목	계
	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2. 서비스·정보 등 이상 시 조치	100.0
	2. 고객 사생활 보호	91.7
	평 균	95.8

(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고객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발간체계 개선계획 및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이슈, 정책 등 서비스 정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p> <p>1. 개인정보 보호 100.0</p> <p>2. 정보인권보장 100.0</p>	항 목	계
	1. 개인정보 보호	100.0
	2. 정보인권보장	100.0
	평균	100.0

(11) 직원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감정노동자 보호,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인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특히 감정노동 보호 조치는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인데 서울연구원은 해당 영역 우수사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
-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11. 직원 인권 보호</p> <p>1. 갑질·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100.0</p> <p>2.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100.0</p> <p>3. 일·가정 양립 100.0</p> <p>4. 감정노동자 보호 100.0</p> <p>5. 휴식권 100.0</p>	항 목	계
	1. 갑질·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100.0
	2.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100.0
	3. 일·가정 양립	100.0
	4. 감정노동자 보호	100.0
	5. 휴식권	100.0
평균	100.0	

(12)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연구원은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큰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감염병과 관련된 차별을 방지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며, 감염병에 따른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직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p>분야12.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p> <p>1. 건강 및 안전 100.0</p> <p>2. 노동자 권리 보호 100.0</p> <p>3. 개인정보보호 및 차별금지 100.0</p>	항 목	계
	1. 건강 및 안전	100.0
	2. 노동자 권리 보호	100.0
	3. 개인정보보호 및 차별금지	100.0
	평 균	100.0

4) 중대성 평가 및 주요 이슈 선정

(1) 주요 인권이슈 도출

- '주요 인권이슈'란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이슈 중에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해당년도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인권이슈를 의미
- 중대성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대·내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슈들을 파악하며, 중대성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년도의 인권영향 주요 이슈를 선정함
- 선정된 주요 이슈 중 외부 평가위원들이 이행수준,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함

인권영향평가 항목			중대성평가결과			
분야	항목(주요 이슈)	지표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3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1	3	2	6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1	3	3	7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1	3	4	8
	1.4 인권경영 성과	7	1	3	4	8
	1.5 구제절차 마련	9	1	3	4	8
2. 고용상의 비차별		22				
	2.1 고용상 비차별	6	1	3	2	6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6	1	3	2	6
	2.3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4	4	3	2	9
	2.4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1	3	2	6
	2.5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1	3	2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5				
	3.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	1	4	2	7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1	4	2	7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6	1	4	2	7
4. 강제노동의 금지		9				
	4.1 강제노동 금지	9	1	3	2	6
5. 산업안전보장		17				
	5.1 작업장 안전	5	1	4	3	8
	5.2 임신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1	3	3	7

인권영향평가 항목			중대성평가결과			
분야	항목(주요 이슈)	지표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5.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1	3	3	7
	5.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1	3	3	7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				
	6.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1	3	2	6
	6.2 모니터링 실시	3	4	4	4	12
	6.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1	3	3	7
7. 시민(현지 주민) 인권보호		1				
	7.1 지적 재산권 보호	1	1	3	2	6
8. 환경권 보장		5				
	8.1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4	1	3	2	6
	8.2 환경정보의 공개	1	1	3	2	6
9. 시민(고객) 인권보호		12				
	9.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5	1	3	3	7
	9.2 서비스· 정보 등 이상 시 조치	1	1	3	3	7
	9.3 고객 사생활 보호	5	3	3	3	9
1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11				
	10.1 개인정보 보호	7	1	3	3	7
	10.2 정보인권보장	4	1	3	3	7
11. 직원 인권보호		31				
	11.1 갑질·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9	1	3	3	7
	11.2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6	1	3	3	7
	11.3 일·가정 양립	8	1	3	3	7
	11.4 감정노동자 보호	5	1	3	3	7
	11.5 휴식권	3	1	3	3	7
12.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9				
	12.1 건강 및 안전	2	1	2	3	6
	12.2 노동자 권리 보호	3	1	2	3	6
	12.3 개인정보보호 및 차별금지	4	1	2	3	6

(2)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p>인 권 이 슈 분 야</p>	<p>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p>
<p>주 요 인 권 이 슈</p>	<p>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p>
<p>주 요 인 권 이 슈 로 선 정 한 유</p>	<p>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미흡하며 그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음</p>
<p>개 선 방 향</p>	<p>1] 협력회사 모니터링 방법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주기 : 연 1회 또는 비정기 실시 - 모니터링 대상 : 계약기간 1년이 초과인 주요 협력사 - 모니터링 방법 :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서면 또는 방문 평가 - 모니터링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시정조치(개선) 요구 및 개선내용 접수 →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실시 <p>2] 협력회사와 계약 이후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검색 후 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시정조치(개선) 요구 및 개선내용 접수 →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실시
<p>효 과 성 측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모니터링 평가 건수/연간 모니터링 계획 건수 × 100 - 시정조치 완료 건수/시정조치 요구 건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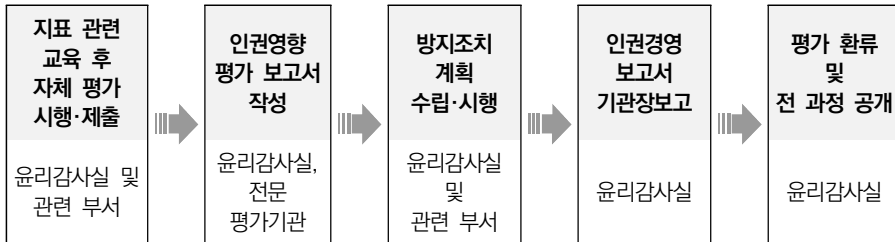
03.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1. 인권경영 실행

1) 실행 개요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분석된 인권리스크 검토 및 방지 조치 검토
- 인권리스크 우선순위 부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시행
 - 평가 결과 '아니오' 및 '보완 필요'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 조치 사항으로 분류하고 관련 부서에서 방지조치 이행 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가 실행 및 환류 체계



- 인권영향평가 결과 부서별 방지조치 계획 수립, 시행
- 인권경영 이행보고서 작성 및 기관장 보고
- 인권경영 이행 내역 전반에 대한 최종 인권경영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내외 공개

2.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1)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수립

- 주요 이슈별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반영 및 검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성과지표(목표)	담당부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계약 관련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개선 시행	1년 초과 장기계약 업체 대상 설문조사지를 활용한 조사	재무팀
	계약 관련 주요 협력사의 모니터링 결과 및 성과 점검	- 연간 모니터링 평가 건수/연간 모니터링 계획 건수 × 100 - 시정조치 완료 건수/시정조치 요구 건수 × 100	재무팀

2) 인권침해 방지조치 실행 결과

대응방안	주요내용	실행결과
계약 관련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개선 시행 (담당부서: 재무팀)	<input type="checkbox"/> 이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보호 준수 강화 계획(안)’ 마련 (2024.11.05.)하여 시행 ○ 1년 초과 장기계약 업체 대상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서면 및 대면 조사 시행(연 1회) ○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강화 노력 <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지속 추진 	추진완료
계약 관련 주요 협력사의 모니터링 결과 및 성과 점검 (담당부서: 재무팀)	<input type="checkbox"/> 이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보호 준수 강화 계획(안)’ 마련 (2024.11.05.)하여 성과 점검 시행 ○ 1년 초과 장기계약 협력기관 17곳 대상 근로조건 준수, 차별 금지, 안전관리 등 인권 관련 사항 점검 결과 100% 준수 ○ 성과지표 : 연간 모니터링 평가건수/계획건수*100 <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지속 추진 	추진완료 (100%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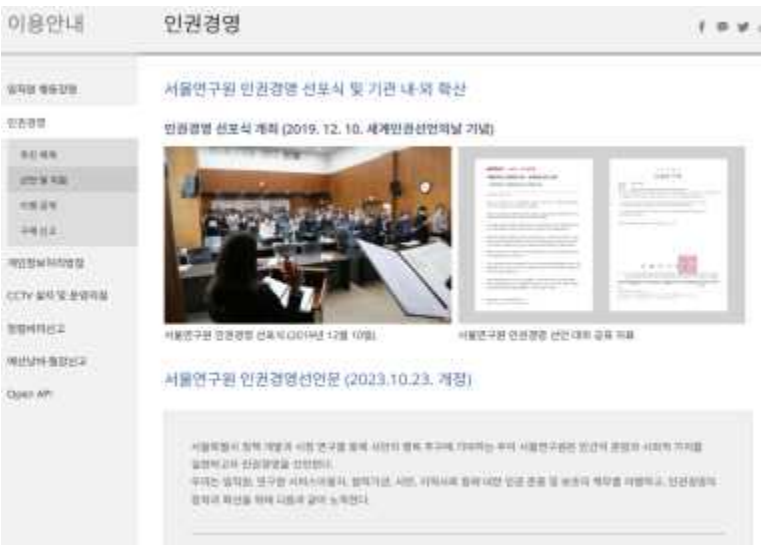
3.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1) 근거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제23조(인권경영 정보 공개)

2) 내용

-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경영 이행 상시 공개 체계 마련

1 depth	2 depth	내용
인권경영	추진 체계	- 인권경영 비전 체계 - 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위원회 소개
	선언 및 지침	- 인권경영선언문(국, 영문) 전문 - 인권경영 선포식 사진 및 언론보도 자료 - 인권경영지침 공개
	이행 공개	- 연간 인권경영보고서 공개
	구제 신고	- 구제 절차 안내 - 인권침해 구제신고 창구 운영(온라인) - 서울연구원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공개
		

04.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1. 인권침해 구제제도 개요

1) 서울연구원 인권침해 구제제도

근거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제32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제32조의8(시정과 조치) -서울연구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지침 -서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대상	-서울연구원 임직원 및 서울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범위	-서울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 주체	-서울연구원장 : 주관부서(윤리감사실)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인권경영 주관부서(윤리감사실)에 누구나 신고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 온라인, 전화, 대면 접수 가능
사건 처리 절차	상담/신고접수 → 조사 및 피해자/신고인 보호조치(2차 피해 예방 포함) → 기관장 보고 (→ 인권침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필요 조치 권고) → 행위자 대상 조치(징계의결 요구 포함) 및 피해자 회복조치 이행, 재발방지 조치 시행
피해자 및 신고자, 조사 참여자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및 공간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학습권 보호 의무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제외)
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의결 요구, 근무역량평가 반영, 재발방지교육 이수 명령, 필요 시 부서전환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등 -중징계 해당 사안의 경우 행위자 의원면직 불허
재발방지 조치	-사건 발생 부서 대상 특별 예방교육 시행, 사건처리 결과 공개 등
제도 운영 점검 주체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 보고

2.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내역

1)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개요

(1) 운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기간 내 신고 접수 사건 수 및 유형 (2024년 12월 9일 기준)

- 총 2건
 - 인권침해 비해당 1건
 - 인권침해 1건(현재 진행 중으로 사건 처리 완료 시 결과 공개)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사건 처리 내역

연번	사례 유형	행위자관계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1	인권침해	상급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2024. 2. 21.) ○ 노무법인 검토 결과 인권침해 비해당 ○ 신고인에 결과 회신 및 피신고인에 주의 조치 시행

부록.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명단

(2024. 12. 9. 현재)

내/외부	소속	이름	성별
위원장/ 외부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장, 공공진료센터 교수	이나미	여
외부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김재왕	남
외부위원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윤형석	남
외부위원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정현찬	남
내부위원	서울연구원 부원장 (당연직)	윤혁렬	남
내부위원	서울연구원 윤리감사실장 (당연직)	강향숙	여
내부위원	직장협의회 노동자위원 스마트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당연직)	양재환	남
내부위원	연구기획조정실 출판지식팀 (추천직)	한혜정	여

※ 외부위원 및 추천직 내부위원 연임 가능

2024 서울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

서울연구원 윤리감사실

2024. 12.